

이 점이 궁금해요?!



• Q.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A.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「감염병예방법」과 관련 절차(입원치료·격리통지서 발부)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-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「감염병예방법」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.

Q.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?

A. 생활지원은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※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Q.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?

A.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- 다만,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.

Q.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?

A. 생활지원비는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.

-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「감염병예방법」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,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더 궁금하신 사항은?



• 유급휴가비용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
서비스 안내·신청·상담 : 국민연금공단 지사

• 생활지원비

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
서비스 안내·신청·상담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
www.mohw.go.kr
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 안내



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
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
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.



유급휴가비용

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어디서 신청하나요?

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얼마나 지원되나요?

격리기간 중의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
(일 최대 13만원)

제출서류는?

-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-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-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- ④ 재직증명서
-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- ⑥ 사업자등록증
- ⑦ 통장사본 등

*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

생활지원비

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·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

어디서 신청하나요?

읍, 면, 동 주민센터

얼마나 지원되나요?

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(14일 이상) 지급
(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기준)

1인	474,600원	2인	802,000원
3인	1,035,000원	4인	1,266,900원
5인	1,496,700원		

*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

제출서류는?

-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
-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
- ③ 신청인 명의 통장(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,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공통사항



언제 신청하나요?

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
지원제외대상은?

- (유급휴가비용) “국가”·“공공기관” 및 “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”
- (생활지원비) 위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(가구원 포함)인 경우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
- '20년 4월 1일 0시 이후(입국검역 강화 조치) 모든 국가 입국자

* 유급휴가비용,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불가